

창원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66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66061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3313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울

담당변호사 강정은

피고, 피항소인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변론 종결2020. 8. 14.

판결 선고2020. 9. 18.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3313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918,52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사천지 G 전 178m²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 9.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 다음에 "또한 아래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 7. 15.자 '보상금 지급의뢰서'에 첨부된 '토지보상금지급조서'와 'M 군도 확·포장 공사 보상금 조정 집행 내역 및 개인별 지급조서' 등에 이 사건 토지 보상금(694,200원)이 H에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일자가 수기로 기재된 후 그 위에 '지급필'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H은 이 사건 도로 개설 이후 사망시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개설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강진명

판사이병호